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(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)

1.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완화(안 제4조제1호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전문개인투자자의 확대 및 창업·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
법(제9조제2항)에서 위임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(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시 최소 투자금액 실적 기준을 3년간 1억원에서
3년간 5천만원으로 완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 자금 유입 확대를 통한 창업·벤처기업 투자 활성화

마. 그밖의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2.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 개선(안 제6조제2항제3호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현행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조합원 수를 합산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출자받은 개인투자조합에 원활한 출자자 확보 및 자금 유입을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한 조합원 산정기준 적용 필요
 - *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수 산정 시 예외 규정을 통해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1인으로 산정(시행령 제34조제3호)
 - 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(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수 산정시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해당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1인으로 산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운용의 자율성 제고 및 개인투자조합 출자 확대를 통한 초기창업기업 투자 활성화

마. 그밖의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3.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후적 지분취득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(안 제9조제1호, 제17조제1호, 제26조제1호, 제37조제1호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창업기획자,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창업·벤처기업 등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분을 취득·소유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여 후속투자과 M&A 활성화 유도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(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)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(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)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(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)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(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피투자기업의 M&A 등에 따라 창업기획자, 벤처투자회사 등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분을 취득·소유하는 경우 처분 의무가 없도록 행위제한 예외 규정 개정

※ 창업기획자, 벤처투자회사, 개인투자조합, 벤처투자조합 일괄 적용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비의도적·사후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분취득·소유를 허용하여 M&A 활성화 촉진

마. 그밖의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4. 창업기획자, 벤처투자회사의 벤처투자회사 경영사 지분 처분 유예기간 부여(안 제17조제3호, 제26조제3호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창업기획자,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창업기획자, 유한(책임)회사가 벤처투자회사에 등록할 경우, 사후적·비의도적 금융회사 지분 취득으로 인한 행위제한 위반 우려

* 창업기획자, 벤처투자회사는 금융회사(벤처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) 지분취득이 금지(시행령 제16조제2호, 제25조제2호)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(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)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(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창업기획자, 벤처투자회사의 피투자기업인 창업기획자, 유한(책임)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 지분 취득 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 처분하도록 유예기간 부여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비의도적으로 금융회사 지분을 취득한 벤처투자회사 등에 매각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 지원

마. 그밖의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5.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범위 확대(안 제17조제3호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창업기획자는 직접 선발·보육한 초기창업기업의 경영지배를 제한적으로 허용*하고 있어,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설립 출자를 위해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허용범위 확대 필요

* ①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·보육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지배이면서,
②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고 7년 이내 전량 매각할 것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(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창업기획자에 허용되는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대상으로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창업기획자가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회사 설립과 투자, 운영까지 전 과정 지원토록 하여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대

마. 그밖의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6.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이해관계자 거래제한 규정 정비 (안 제26조제4호, 제37조제3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벤처투자회사·조합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행위제한의 예외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프로젝트 투자를 규정
- 다만,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프로젝트 투자 시, 계열회사,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제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해상충 방지 및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피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벤처투자회사·조합 특수관계인 거래제한을 문화산업전문회사에도 적용할 필요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(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)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(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)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프로젝트 투자 시,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금지를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활용한 벤처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 운용사의 관계사 투자 규정을 정비하여 이해상충 방지 강화

마. 그밖의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7. 달러 기반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(안 제34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해외자금 유치 확대 및 이중 환전 부담 해소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달러화로 결성·운용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(법 제50조제2항) 등록 요건에 명시할 필요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(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)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중 출자금 총액, 출자 1좌 금액의 범위를 ‘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미화’로 구체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

마. 그밖의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8. 특수목적펀드 투자의무 완화(안 제35조제7항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M&A펀드의 주목적 투자(60%)에 따른 투자인정 금액으로 기업 인수금액 이외에 인수측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포함할 필요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(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인수·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인수·합병하고자 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신용공여를 포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M&A펀드의 주목적 투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M&A 활성화 유도

마. 그밖의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9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(안 제41조의2제1항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 규모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(법 제63조의2제1항)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요건을 완화할 필요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(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규모(1,000억원→500억원) 및 최초 출자금액 요건(200억원→100억원)을 완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자금 유치 확대를 통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조성 활성화

마. 그밖의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벤처투자회사의 인수·합병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 (안 제26조제1호·제2호·제3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과 인수·합병을 허용하고, 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 소유하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비업무용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예외를 규정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(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)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벤처투자회사가 인수·합병을 목적으로 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식등의 취득을 허용
 - * 벤처투자회사는 금융회사(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) 지분취득이 금지(영 제25조제1호)
-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유한(책임)회사와 인수·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주식등을 취득할 경우, 합병 후 9개월 내 매각하도록 완화
 - * 벤처투자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 금지(법 제39조제1항)
-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유한(책임)회사와 인수·합병으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1년 내 매각하도록 완화
 - * 벤처투자회사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금지(법 제39조제1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간 인수·합병을 통해 기업구조 다변화 및 벤처투자 생태계의 스케일업 유도

마. 그밖의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1. ‘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’ 명칭 변경 반영(안 제3조제3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 현황·성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기관으로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를 명시하고 있으며, 명칭이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로 변경(‘24.7)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(실태조사)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기관 명칭을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에서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로 변경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 : 해당없음

마. 그밖의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2. ‘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한 조합의 투자비율’을 의미하는 조문 명확화(안 제3조제3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‘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’을 의미하는 조문이 법령상 다르게 표현되어 하나의 문구로 통일할 필요

* (법)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
(시행령)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(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)

-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한 자조합의 투자비율은 한국벤처투자가 시행한 별도 공고를 통해 정하고 있어, 시행령 문구 정비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 방식 명확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령 수요자의 이해도 제고 및 혼선 방지

마. 그밖의 참고사항 : 해당없음